

노인인권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활노인의 권리

-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 신고 및 진행절차

1. 건의함, 신고함 설치로 노인학대 사례 신고를 위한 환경 조성
2. 사전예방을 위해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
1인 이상 참여, 노인들의 요구 및 불만사항 신속 처리
3. 시설종사자는 서비스 제공 과정 중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 관찰
4. 노인학대 **발견 즉시 해당 시설 내 신고.**
노인학대 관련기관 신고(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번 / 보건복지콜 129번)
5. 학대의심사례 조사->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현장조사 결과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 구성->조사완료 후 시군구 조속 보고
->학대 사례 보호조치->평가와 사후조치

노인학대의 유형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게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노인학대 행위의 종류

노인학대유형 ①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01



노인학대유형 ②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02



노인학대유형 ③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03



노인학대유형 ④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04



노인학대유형 ⑤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스스로가 최후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상상의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05



노인학대유형 ⑥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06



신고방법 1577-1389 또는 보건복지콜 129

억제대 및 신체구속 시 주의점

억제대 사용 지침

- 1) 억제대 사용은 다른 치료적 대안이 효과가 없을 때, 최소한으로 필요한 시간만 사용한다.
- 2) 억제대를 사용할 때는 어르신에 대해 주의 깊게 사정한 후 사용한다.
- 3) 어르신 및 보호자에게 억제대를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 4) 억제대를 사용한 구체적 사례와 억제대 사용 시작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 5) 어르신이 억제대를 적용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억제대 사용이 적절한지를 사정하여 불필요한 경우 빨리 제거한다.
- 6) 어르신이 억제대를 적용하는 동안 국소적인 과도한 압박을 피하고 2시간마다 피부의 발적 상태 및 순환 상태를 관찰한다.
- 7) 어르신이 흉부 억제를 적용하는 경우 호흡에 지장이 없는지 관찰한다.
- 8) 억제대를 적용하는 동안 식사 및 수분 공급, 배설 요구를 자주 확인하여 불편감을 줄인다.

억제대 안전관리

- 1) 억제대는 어르신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는 기구로써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억제대의 종류에는 손목억제대, 허리벨트, 억제용 장갑 등이 있으며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
- 2) 어르신의 질병, 상해로 인해 정신이 혼동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심한 불안, 초조상태나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불안정하거나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경우 억제대를 적용할 수 있다.
- 3) 억제대를 사용하는 목적은 어르신, 가족, 의료진을 상해로부터 보호하고 치료에 필요한 튜브나 드레싱을 환자가 제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4) 억제대 사용 결정에는 어르신과 가족을 참여시켜야 하며 지속적으로 최상의 간호를 제공한다. 억제대를 사용하는 동안 세심한 관찰을 시행하고 억제대 사용이 더 이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한다.
- 5) 억제대 적용과정에서 어르신이 심하게 저항하는 경우 손을 뺀다든지 피부에 상처를 입는 등의 신체적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다. 또한 억제대를 너무 조여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고통을 당하거나 심한 흥분과 모욕감으로 혀를 깨무는 경우도 있으므로 억제대 적용과정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 ① 신체적 억제 방법보다 만족할만한 방법을 문제를 해결해보도록 모색한다.
 - ② 주의 깊게 관찰하고 미리 어르신의 행동을 예견하여 어르신에게 도움이 되게 하고 신체적 억제의 고통도 최소한으로 줄인다.
 - ③ 어르신이 저항하고 공격적일 경우 신체적 상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처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시도한다.
 - ④ 끈을 너무 조여서 사지에 혈액순환이 안 되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 ⑤ 어르신 스스로 억제대를 제거하여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 ⑥ 식사, 수분공급, 배설에 신경 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 ⑦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